

『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3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

- 2009년 4월 6일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
- 2009년 5월 18일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최 경 환

나. 제안이유

- 우리 고장출신의 항일 의병장(13도연합 창의군 군사장)이신 왕산 허위선생의 숭고한 우국충정을 기리고,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
- 위탁운영을 통해 광복회, 독립유공자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, 원활한 기념사업 활동과 시설이용객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【확보재산】

□ 왕산기념관 신축 건물

- 위 치 : 구미시 임은동 산 7번지
- 규 모 : 부지 53,950㎡, 건축연면적 1,950㎡(지하1층, 지상2층)
- 건축가격 : 3,117백만원(설계가격 기준)
- 시 설 물 : 건물 1동

□ 왕산기념 공원

- 위 치 : 구미시 임은동 262번지 외 2필
- 면 적 : 1,990㎡
- 시 설 물 : 왕산의 벽, 동상, 휴게시설 등

라. 위탁시기 : 2009년 중

마. 수탁기관 : 왕산기념 사업회

바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
- 「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동의안은

-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규정과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
- 시 직영시 자료수집전시, 창서관리 등 운영의 내실화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 및 운영경비 절감과 민원발생소지를 해소시킬수 있으나, 자체인력의 부족으로 타부서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반면
- 민간 위탁시 운영경험 부족 및 소극적인 운영으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나 광복회, 독립유공자회 등 민간단체와 대내외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
- 아울러,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